

자동차 제작 및 수입을 위한 제작자등 등록 신청 매뉴얼

2021. 7

국 토 교 통 부 자 동 차 정 책 과

※ 본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통합검색 '제작자등'으로 검색

차 례

1. 제작자등 등록이란?	3
2. 제작자등의 의무	4
3. 제작자등록 절차	6
1) 업무흐름도	
2) 소요기간	
3) 신청방법	
4. 제작자등 등록 구비서류	7
1) 자기인증 능력 미확보 제작자등 등록	7
(제작·조립 : 특장차 등 제작·조립 업체 / 수입 : 개별·병행수입자)	
2) 자기인증 능력 확보 제작자등 등록	9
2-1) 자기인증 능력 확보 제작·조립자	
2-2) 자기인증 능력 확보 수입자	
3)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11
(또는 자가 사용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5. 변경신청	12
6. 재발급 신청	15
7. 기타	15
1)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2) 제작자등 등록증 수령	
3)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담당 기관	
4)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5)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8. 제작자등록 신청서	18
9. 제작자등록 신청서 작성 요령	19
10. 제작자등 등록 관련 규정	22
<참 고 1> 자동차 무상수리 대행 계약서	29
<참 고 2> 자동차 무상수리 확인서	31

1. 제작자등 등록이란?

-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을 자기인증이라 하며,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여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를 제작자등이라 합니다.

제작자등 등록이란 자기인증을 위하여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제작·시험·검사 시설 등 자기인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제작자등은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기인증을 하여야 하며, 자기인증을 하기 이전에 제작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기인증 능력 확보 유무, 등록 목적, 자동차 종별 등에 따라 구비 서류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국내제작자>

-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 연간 제작·조립대수가 2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하는 자
- 제작·조립하려는 차종에 대한 안전기준 시험시설 확보자

<수입자>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어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자(수입자에 한함)

2. 제작자등의 의무

- 1) 제작자등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 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17호에 따라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 (변경) 제작자등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6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확인한 결과 등록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3) (반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에 따라 제작자등 등록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반납매뉴얼 확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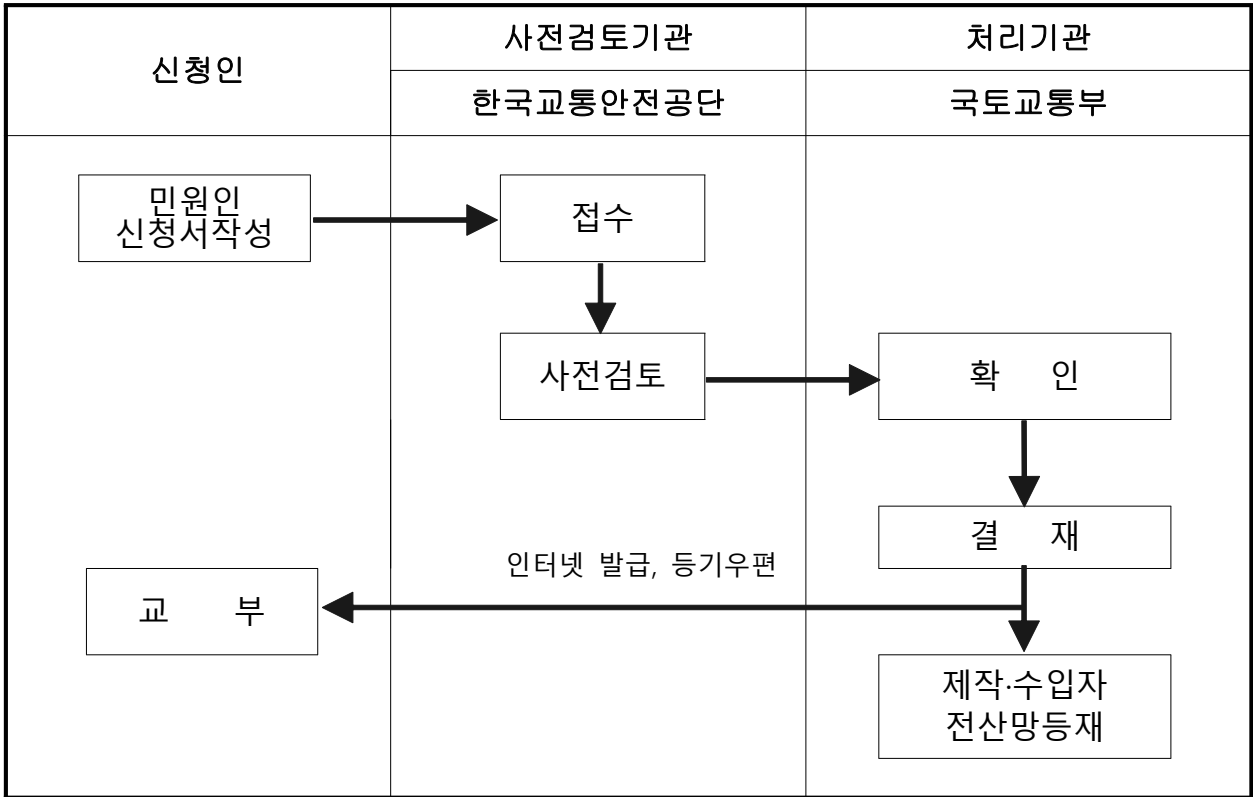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기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할 수 있다.

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시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판매를 하였으나 폐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밖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작자등록 절차

1) 업무흐름도



2) 소요기간

- 신규신청 : 15일, 변경·재발급 신청 : 7일

3)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우편 접수

- 인터넷 접수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maker.ecar.go.kr → 민원신청 → 등록
민원 →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중 재발급 신청
 - 우편 접수
(우편번호) 18247
(주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인증처 제작자등 등록담당(031-630-5879)
- ※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는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제작자등 등록 구비서류

- * 자동차 제작·조립자 중 일정 시설·장비를 갖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3에서 정한 작업범위 내에서 튜닝 가능,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054-440-3044)로 문의

1) 자기인증 능력 미확보 제작자등(제작·조립·수입) 등록

(제작·조립 : 특장차 등 제작·조립 업체 / 수입 : 개별·병행수입자)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별지18호 서식 p.18 확인, 작성방법은 p.19 확인)

②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인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③ 판매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외)

※ '가' , '나' 중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

가. 제작자가 정비업을 등록한 경우

- 자동차 무상수리확인서(p.31 확인)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나. 제작자가 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 무상수리대행계약서 사본(p.29 확인)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정비업체 소유)

※ 자동차 제작자등은 해당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으로 등록(또는 법 제 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여 직접 사후관리를 하거나 정비업체와 무상수리대행계약을 맺고 정비업체를 통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이란?**

- 승용(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합(경형, 소형), 화물(경형, 소형), 특수(경형, 소형)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에서 사후관리 가능(승합·화물·특수의 중형 및 대형 불가)
- 자동차종합정비업은 모든 자동차의 사후관리 가능(승용, 승합, 화물, 특수)
- 그 외 자동차전문정비업 등은 사후관리 불가능

- ④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제2종 100호, 납부방법안내 p.15~16 확인)

2) 자기인증 능력 확보 제작자등 등록

2-1) 자기인증 능력 확보 제작·조립자(예 : 현대, 기아 등)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별지18호 서식 p.18 확인, 작성방법은 p.19 확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③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 대수)

④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 실적

⑤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⑥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⑦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 내역 또는 확보계획(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등)

⑧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제2종 100호, 납부방법안내 p.15~16 확인)

※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⑤,⑥,⑦호 제외

2-2) 자기인증 능력 확보 수입자(예 : 벤츠, BMW 공식수입사 등)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별지18호 서식 p.18 확인, 작성방법은 p.19 확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③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합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④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원제작자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WMI)

⑤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등)

⑥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제2종 100호, 납부방법안내 p.15~16 확인)

※ 이륜자동차 수입자는 ⑤호 제외

'③, ④'번 서류 준비시 게시판의 첨부파일 2 '자기인증 능력 확보 수입자 제작자등 등록 신청 유의사항' 참고

- 3)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제작·조립·수입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는 세관의 통관(**일반수입**, 이사화물 수입) 결과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세관을 통관할 때 수입신고서에 **일반수입으로** 통관된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제작자등 등록을 한 다음** 자기인증절차를 거쳐야 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관 통관시 수입신고서에 **이사화물로** 통관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이륜차의 경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신규검사를 받으면 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자등 등록 절차 없이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신규검사**를 받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별지18호 서식 p.18 확인, 작성방법은 p.19 확인)

- ②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인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 ③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제2종 100호, 납부방법안내 p.15~16 확인)

5. 변경신청

*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별지18호 서식 p.18 확인, 작성방법은 p.19 확인)

② 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③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인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④ 당해년도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 자가사용 목적 또는 당해년도에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제2종 100호, 납부방법안내 p.15~16 확인)

2) 제작 등을 하려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차종 변경)하는 경우 또는 등록목적을 판매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후관리 업체(정비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 차종 변경 및 추가는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만 해당하며, 이륜 차종 추가는 신규(등록증 별도 발급)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별지18호 서식 p.18 확인, 작성방법은 p.19 확인)

* 판매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신청서 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무상수리 확인서 또는 무상수리대행계약서의 날인과 일치해야함

② 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③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인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④ 판매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외)

※ '가', '나'중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

가. 정비업 등록 업체의 경우

- 자동차 무상수리확인서(p.31 확인)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나. 정비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 자동차 무상수리대행계약서 사본(p.29 확인)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정비업체 소유)

※ 자동차 제작자등은 해당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으로 등록(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 인력 등을 확보)하여 직접 사후관리를 하거나 정비업체와 무상수리대행 계약을 맺고 정비업체를 통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이란?

- 승용(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합(경형, 소형), 화물(경형, 소형), 특수(경형, 소형)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에서 사후관리 가능(승합·화물·특수의 중형 및 대형 불가)

- 자동차종합정비업은 모든 자동차의 사후관리 가능(승용, 승합, 화물, 특수)

- 그 외 자동차전문정비업 등은 사후관리 불가능

⑤ 당해년도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제2종 100호, 납부방법안내 p.15~16 확인)

※ 자가사용 목적 또는 당해년도에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제외

3)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대리인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
(자기인증능력 확보 수입자에 한함)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별지18호 서식 p.18 확인, 작성방법은 p.19 확인)

② 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③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인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p>*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p>

④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 당해년도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제2종 100호, 납부방법안내 p.15~16 확인)

※ 당해년도에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제외

6. 재발급 신청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별지18호 서식 p.18 확인, 작성방법은 p.19 확인)

②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인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③ 당해년도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사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제2종 100호, 납부방법안내 p.15~16 확인)

※ 자가사용 목적 또는 당해년도에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제외

7. 기타

1)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개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지방세 창구(또는 등록면허세 담당부서)에 아래의 등록면허세명을 말씀하시고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 납부하시고, 기타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해당 지자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세명 :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제2종 1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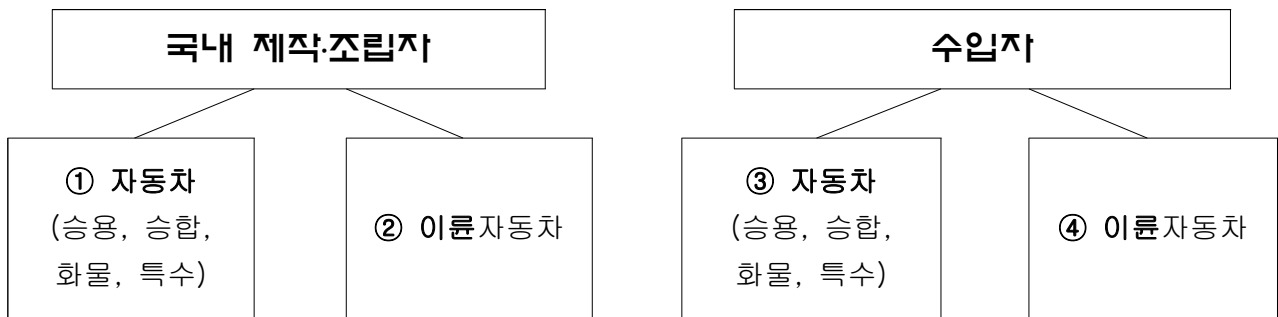
- 지방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제작자등 등록 신청 전 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제38조(면허시의 납세확인) 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라 제작자등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매년 부과 될 수 있으며, 등록증 1장당 개별 부과됩니다.

제작자등 등록증은 제작구분과 종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대 4장까지 발급되며, 등록면허세는 등록증 1장당 개별 부과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증 유형별 분류 〉



2) 제작자등 등록증 수령

○ 등록증은 제작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등록 신청받은 주소지(신청서에 작성한 주소(또는 사업장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인터넷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임 등의 규정이 없어 신청인으로부터 임의로 위임장을 받아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며, 대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변경신청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담당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 담당 : 031-630-5889
이륜자동차 담당 : 031-630-5879

※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 자동차안전연구 ⇒ 인증 및 평가
⇒ 기술검토 안전검사에서 절차 확인

4)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대상자동차는 자기인증과는 별도로 배출가스·소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배출가스·소음인증신청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032-560-7634,7637)

5) 자동차 제작자등의 튜닝(044-201-3841, 3842)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튜닝작업을 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 중 튜닝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등에도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2항, '16.9.7 시행)
-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확인증 발급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054-440-7844)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7일)	
신청인	제작자명(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원제작자	상호(법인명)	(※수입자만 해당)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제작구분		[] 국내 제작·조립자 [] 수입자		
등록목적		[] 판매목적 [] 자가사용		
제작등을 하려는 자동차		[] 완성자동차 [] 미완성자동차		
제작등을 하려는 자동차의 종류 및 규모 (※미완성자동차의 경우 제작자등이 정하는 차종)	종류	규모		
	[] 승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승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화물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특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이륜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제작자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제작자등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 실적) 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내역 5.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서(수입자만 해당합니다) 6. 등록증(휠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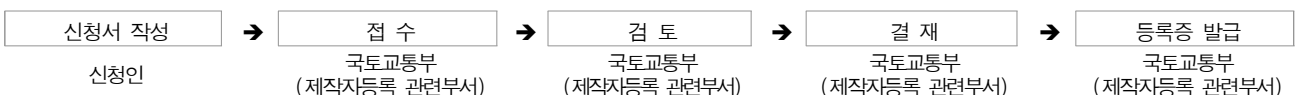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9. 제작자등록 신청서 작성 요령

변경등록 및 재발급 신청도 반드시 모든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신청인

① 제작자명(법인명)

-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개인인 경우 개인 성명 기재

②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미작성

③ 대표자 성명

- 법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인 경우 개인 성명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법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번호 기재(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번호 기재)
※ 외국인이며 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 생년월일 기재 후 여권 사본첨부

⑤ 주소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제작자등으로 등록하는 신청인의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2) 원제작자(자기인증 확보 수입자(지정수입자)만 작성)

- ① 상호(법인명) : 외국의 최초제작자명을 기재(영문)
- ② 주소 : 최초제작자 소재지 영문 기재(원제작자의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3)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

4) 제작구분(제작구분에 따라 제작자등 등록증 각각 발급)

- ‘국내 제작·조립자’ 또는 ‘수입자’ 중 해당하는 경우에 반드시 체크(중복체크 가능하며, 등록증은 각각 발급됨)

5) 등록목적 : 해당하는 경우에 반드시 체크(중복체크 가능)

- 판매목적 : 제작자등 등록 후 자기인증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 자가사용 : 제작자등 등록 후 자기인증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작자등 등록’하는 자가 직접 사용(자가사용)하는 경우

6) 제작 등을 하려는 자동차

- ‘완성자동차’ 또는 ‘미완성자동차’*중 해당하는 경우에 반드시 체크

※ 트레일러(캠핑, 보트 트레일러 등)는 완성자동차에 해당함.

[미완성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의4호에서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란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

7) 제작 등을 하려는 자동차의 종류 및 규모(p.24 별표1 자동차의 종류 확인)

- 제작·조립자 등이 생산 또는 계획하고 있는 차종, 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차종 및 규모 체크(중복체크 가능)
(자동차, 이륜자동차를 구분하여 제작자등 등록증 각각 발급)

8) 신청인

- 법인인 경우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과 인장 또는 서명날인, 사업자 및 개인은 대표자 인장 또는 서명날인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제작자등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작자등 등록 신청서' 하단의 동의서를 통해 동의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 제작자등 등록 관련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동차관리법'으로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 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1.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

라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및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른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이하 “시정조치계획등”이라 한다)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사 결과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시정조치계획등이 보고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⑩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통지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⑪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0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8항에 따라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진단기·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3의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및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이 경우 공개 대상 등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제1호의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인증대체부품과 제34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체부품과 튜닝용 부품의 사용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에 따라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가 무상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7. 12. 26., 2019. 8. 27., 2020. 2. 4.>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떼는 자
-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 시설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 15의2.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및 대체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 20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20의3.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20의4.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20의5.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20의6.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20의7.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 22의2.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25의2.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 25의3.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 정보제공을 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떼는 자
-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 15의2.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 부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및 대체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 20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20의3.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20의4.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20의5.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20의6.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20의7.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제37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 22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 22의3.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25의2.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 25의3.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 정보제공을 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작자등의 등록신청)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실적)
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한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4.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6.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등의 서류(수입자에 한한다)
7.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주소의 변경이나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의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등록증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2.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
2.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 등 변경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작자등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에서 “생산 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2. 연간 제작·조립대수(신규 제작·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가 2천 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하는 자일 것
3.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차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자일 것

가. 승용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97조 내지 제104조, 제110조

나. 승합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7조, 제103조, 제110조

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라. 피견인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① 제작자들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해당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무상수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6에서 같다)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② 제작자들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작자들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제작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자들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가격 자료가 표시된 인쇄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 제작자들은 제2항에 따른 부품의 공급 기간 이상 동안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해당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제작자들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작자들이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이행명령을 하기 전 무상수리 대상여부 등 제작자등과 자동차 소유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성능시험대행자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등록목적이 “판매목적”인 경우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모든 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승용자동차,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록업체이거나 등록업체와 무상수리대행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초 소 형	일 반 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000cc 미 만이고, 길 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600cc 미 만이고, 길 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600cc 이 상 2,000cc 미 만이거나, 길 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 기 량 이 2,000cc 이 상이거나, 길 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 차 정 원 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 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 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000cc 미 만이고, 길 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 만 이 거 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최고 정 격 출 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참 고 1〉

자동차 무상수리 대행 계약서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2항 관련)

본 계약서는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의한 제작자등(갑)’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의한 무상수리대행자(을)’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갑과 을간의 무상수리 대행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 01 조 [목적]

갑이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을이 무상수리 대행자로서 이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갑과 을의 역할 및 그 이행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02 조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와 유지]

1.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갑이 판매한 자동차의 무상수리 대행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2. ‘을’은 시설 및 사업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 제1항의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갑에게 최소 00일 전에 그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 03 조 [무상수리]

‘을’은 ‘갑이 자기인증하여 제작판매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9조의3에서 규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 04 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00년00월00일부터 00년00월00일로 한다.
2. 갑은 계약기간동안 계약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00일 까지 국토교통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05 조 [필요 규정]

갑과 을 간의 필요 규정

•

•

제 06 조 [준용 규정]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규정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021.00.00

갑	을

붙임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 (갑)제작자 날인시

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인 날인과 동일하게 날인(또는 서명)

〈참 고 2〉

자동차 무상수리 확인서

1. 당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 유지하면서 자기인증하여 제작·판매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9조의3에서 규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2.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 사항이 변경될 경우 그 사실을 변경사항이 발생되기 전 00일 까지 국토교통부에 그 사실을 보고 하겠습니다. 끝.

2021.00.00

000자동차정비

대표 : 000

전화번호 : 00-000-0000

붙임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